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 방 자 치 단 체 에 두 는
소 방 공 무 원 의 정 원 에 관 한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시·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
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
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소방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20156호, 2024. 1. 30.
공포, 2024. 7. 31. 시행)됨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경찰공무원의
정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제명을 「지방자치단체에
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에서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
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
에 두는 경찰공무원 7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 및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소방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6. 00. ~ 6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음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”을 “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3조의3”을 “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”으로, “소방공무원”을 “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소방공무원”을 “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”으로, “제4조의2제2항제3호”를 “제4조의2제2항제5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·도 소방본부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.
제2조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소방공무원의 시·도별”을 “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시·도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은 시·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에만 적

용한다.

제2조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소방공무원”을 “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이 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.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

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시·도 소방본부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별표 1의2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의2]

시·도 소방본부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표(제2조제3항 관련)

경찰공무원 계	72
총경 이하	72

비 고

1. 시·도 소방본부에 두는 경찰공무원 72명은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며 그 계급은 경감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</u>	<u>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</u>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소방기본 법」 제3조의2 및 <u>제3조의3</u>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 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<u>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</u>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원) ① 특별시·광역시· 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두는 <u>소방공무원의 정원</u>은 「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」 제4조제2항제5호, <u>제4조의</u> <u>2제2항제3호</u>, 제8조의2제1항,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 합하여 정할 수 있다.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3조의3</u> 및 <u>제4조제2항</u>----- ----- <u>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</u>---- -----. 제2조(정원) ① ----- ----- ----- <u>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</u>---- ----- ----- <u>제4조의2</u> <u>제2항제5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시·도 소방본부에 두는 경 찰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</u>

⑤ 시·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·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·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·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⑥ _____

---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

⑦ 이 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

제3조(정원의 조정 요구 등) ① 소방청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별정원의 조정을 위해 매년 9월 30일까지 시·도별 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. <후단 신설>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 변동이 필요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제·개정하거나 소방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

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.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

제3조(정원의 조정 요구 등) ① -

----- . 다만 시
. 도 소방본부에 두는 경찰공무
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
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
다.

② ----- 시·도
지사-----

의해야 한다.
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90